

호주에서 아동의 인터넷안전 법제

I. 호주 인터넷 사용 현황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이 위치한 호주 시드니를 걷다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다. 호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성인의 경우 85%에 달해(18세~75세)¹⁾ 거의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서 호주의 학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는 인터넷이 효과적인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2008년 캐빈러드 당시 호주 총리가 추진한 디지털 교육 혁명(Rudd government's Digital Education Revolution)²⁾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의 9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22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되어 연방 정부와 주정

부 공동으로 네트워크 기반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말기 구입 및 보급, 각 학교까지 고속 인터넷 광케이블 망 연결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온라인 커리큘럼 개발 등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교육 혁명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취업, 연구, 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전자 단말기(PC, 노트북, 태블릿 등)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교육과정에서 활용하여 학습능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호주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5년 기준 86%³⁾에 달하며, 특히 호주 아동의 인터넷 접속률은 97%에 달하여 거의 모든 호주 아동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널리 보급된 호주의 인터넷 및 무선데이터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호주에서 제공되고 있으

1) AIMIA's survey 2015.

2)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3) ABS, Househol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ustralia, 2014-15.

며 주요 이용 서비스로는 동영상 스트리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있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하루 세 번 이상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18-24세(90%)이며, 뒤를 이어 십대인 14-17세(83%)로 호주의 젊은층이 가장 활발하게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들은 단순히 자주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하루 중 더 많은 시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집, 가정,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호주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PC와 태블릿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함에 있어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혹은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표현되는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교내 괴롭힘 등은 법제화 혹은 정책화되어 각 학교에서는 괴롭힘 방지정책(Anti-Bullying policies)

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불과 10여년 전 만해도 극소수만 이용했던 모바일 인터넷 기반 온라인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괴롭힘에 대처할 방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최근 수년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II.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 강화법 (Enhancing Online Safety for Children Act 2015)의 배경

호주의 아동 3명중 1명은 괴롭힘(bullying)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에서는 이러한 교내 괴롭힘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괴롭힘은 신체적인 괴롭힘 외에도 정신적인 괴롭힘도 포함하고 있으며 괴롭힘이 일어나는 장소의 영역도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물리적인 장소 외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사이버(cyber)환경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괴롭힘의 양상은 다수의 가해자가 1인 또는 소수의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도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⁵⁾

4) Roy Morgan Single Source.

5) Livingstone, S. and Smith, P.K. (2014: 10). Harms experienced by child users of online and mobile technolog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ssociation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Published by John Wiley & Sons Ltd.

아동들 사이에서의 괴롭힘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나, 호주의 아동들이 많은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보내게 됨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괴롭힘은 그 위해성이 더 심각하다. 전통적인 괴롭힘은 괴롭힘이 일어나는 장소를 벗어나 안전한 가정이나 학교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해소될 수 있으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피해자를 설 틈 없이 괴롭히게 되며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피해자는 걱정, 불안, 자살충동, 우울증, 정신분열적 행동이 상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괴롭힘 보다 사이버 괴롭힘은 자살충동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었다.⁶⁾

〈표 1〉 대표적인 사이버 괴롭힘의 종류⁷⁾

괴롭힘의 종류	설명
괴롭힘 (Harassment)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달
사이버 스토킹 (Cyberstalking)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를 놀리거나 위협
명예훼손 (Denigration)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거나 관련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모욕
영상자료 유포 (Happy slapping)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 촬영된 영상물 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
따돌림 (Exclusion)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돌림
허위 사실 유포 (Outing and trickery)	피해자의 괴롭힘을 확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괴롭힘을 확산
의인화하거나 사칭 (Impersonation or masquerading)	피해자로 사칭하여 공분을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도록 유도
간접위협 (Indirect threat)	사이버상에서 임박한 물리적 공격을 가장하여 위협하는 것으로 사이버 스토킹과는 달리 반복적인 경우는 드물며, 사이버 상에서 간접적으로 물리적 위협을 확산시키는 것임

6) Spears, B., Keeley, M., Bates, S. & Katz, I (2014) Research on youth exposure to, and management of, cyberbullying incidents in Australia: Part A – Literature review on the estimated prevalence of cyberbullying involving Australian minors (SPRC Report 9/2014)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UNSW, Australia.

7) O. C. Langos, 'Regulating Cyberbullying: A South Australian Perspective' (2014) Flinders Law Journal 72, pp 75–6.

실제로 2013년 9월 호주의 타즈메니아 주에서 일어나 15살 여자학생의 자살사건, 2013년 4월 시드니에서 일어난 13세 여자학생의 자살사건 등이 사이버 괴롭힘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사이버 괴롭힘이 아동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호주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결과를 통해 학교 등 물리적 장소 외에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롭힘에 대한 심각성을 호주 정부가 인식하였으며,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조사하여 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에 보고서를 제출 2013년 선거에 핵심 공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Ⅲ.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 강화법의 주요내용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 강화법은 2015년 3월 5일 가결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법에 따라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 위원회(Office of the 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가 설립되었다. 위원장은 법에 따라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조사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신고대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2분류(Tier)의 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

1분류에 해당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위원회와 협동체제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2분류에 해당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공표되며 위법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법적 책임 및 민법상 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의 게시자 개인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대상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받았다.

그 외에도 위원장은 방송서비스의 온라인 콘텐츠제도법(Online Content Scheme in the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제5조 및 제7조 (Schedule 5, 7)에 따라 온라인상의 금지된 자료나 금지 대상이 될 자료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게임, 동영상, 기타 온라인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피의자의 처벌에 관해서 호주 연방 형법 및 각 주별 형법이 명시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사이버 괴롭힘의 피의자는 형사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표 2〉 사이버 괴롭힘이 적용 가능한 호주 연방 및 각 주별 형법 조항⁸⁾

주(州)	법조항	주요 내용
연방정부	Section 474.15 of the Criminal Code Act 1995	(사이버서비스 등을) 위협으로 사용
	Section 474.17 of the Criminal Code Act 1995	(사이버서비스 등을) 협박, 괴롭힘 및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
ACT	Section 26 of the Crimes Act 1900	일반 폭행
	Section 35 of the Crimes Act 1900	괴롭힘(스토킹)
NSW	Section 13 of the Crimes (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괴롭힐 의향을 가지고 괴롭히거나 협박
	Section 31 of Crimes Act 1900	살해위험이나 상해의 위협에 관한 내용을 보내는 행위
	Section 60E of Crimes Act 1900	학교 내에서 공격이나 괴롭힘 위협 등을 하는 행위
	Section 61 of Crimes Act 1900	일반 폭행
NT	Section 188 of the Criminal Code Act	일반 폭행
	Section 189 of the Criminal Code Act	불법적 괴롭힘
QLD	Section 359E of the Criminal Code Act 1899	불법적 괴롭힘
SA	Section 19AA of the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불법적 괴롭힘
	Section 20 of the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폭행
TAS	Section 192 of the Criminal Code Act 1924	괴롭힘
	Section 184 of the Criminal Code Act 1924	일반 폭행
VIC	Section 21A of the Crimes Act 1958	괴롭힘
	Section 31 of the Crimes Act 1958	폭행
WA	Sections 78; 79; 80B; 80D of the Criminal Code Compilation Act 1913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해위협
	Section 338A of the Criminal Code Compilation Act 1913	폭행
	Section 338D of the Criminal Code Compilation Act 1913	괴롭힘

8) Office of the 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

이와 같이 호주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nhancing Online Safety for Children Act 2015, Online Content Scheme in the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Criminal Law 세 가지의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의 주요 발생처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사이버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안타깝게도 사이버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송 서비스의 온라인콘텐츠제도법(The Online Content Scheme in the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IV.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 강화법의 특징

사이버 괴롭힘은 많은 부분 전통적인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이버 괴롭힘은 괴롭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위자의 개입이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는 호주의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과 모바일 기기에 대

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으며 다수의 피의자들의 개입도 용이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이버 공간과 학교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의 파괴적인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 강화법은 당법의 적용에 핵심적인 기관으로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위원회를 개설하여 위원장에게 사이버 괴롭힘이 발생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관리, 정보의 접근, 수정 및 삭제 등에 관한 권한 그리고 위법 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및 시정명령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위원회의 포괄적이며 강력한 권한은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감소 그리고 피의자 처벌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게시된 아동들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 실행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도록 협력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조언을 제공
-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아동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안하도록 연구기금 설립
- 학교 내에서 자발적인 온라인 안전과정 인증을 지원
- 학교가 온라인 안전 교육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금 마련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역할은 관리, 감독,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분량의 자원과 예산을 방지교육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V. 시사점

성인과 달리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충격과 같은 요인에 취약하며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여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아동기의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또래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도 하여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이 시기에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청소년이나 아동은 극심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며 작게는 좌절, 우울감, 자존감의 상실 등을 경험하며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가 사이버 괴롭힘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감독 및 보호할 책임이 있는 어른들은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발전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가시적인 물리적 충격이나 피해가 보이지 않는 사이버 괴롭힘에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폐단도 우려되었다. 실제로 각국에 걸쳐서 일어난 사이버 괴롭힘에 기인한 청소년의 자살 사건에는 부모나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의 인식이 결여되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한 피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행히 호주에서는 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져 2013년을 기점으로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강

화법의 입법이 진행되어 2015년 최종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당법이 시행된 것은 온라인 범죄에 대한 진일보한 호주의 입법 대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법이 시행되면서 설치된 온라인 안전위원회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은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기 위해 사이버 상의 범죄에 형법도 적용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방송 서비스의 온라인 콘텐츠제도법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이버 공간의 특징인 매우 빠른 확산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계 제조사 및 온라인서비스 공급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급자 등과 협력하여 부모가 자녀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잠재적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검증된(Certified)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다. 호주의 학교에서는 이미 지속적으로 괴롭힘 방지정

책(Bullying: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Student Bullying in Schools Policy)⁹⁾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 모두 진지하게 교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위원회의 노력도 해당 범죄 감소와 예방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동을 위한 온라인 안전강화법이 제정됨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된 것은 사실이나, 위원회의 역할은 법적 수단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며 산업계와 교육계 그리고 부모와 당사자인 아동들이 모두 참여하여 계도하며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많은 노력을 포함하고 있어, 법제에만 만족하지 않고 법의 취지에 맞게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전체 공동체가 받아들이며 다 같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성숙한 호주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윤 준 기

(KOTRA 호주 시드니무역관 과장)

9) The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

참고문헌

ABS, Househol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ustralia, 2014-15.

AIMIA's survey 2015.

Langos, O. C. , 'Regulating Cyberbullying: A South Australian Perspective' (2014) Flinders Law Journal 72.

Livingstone, S. and Smith, P.K. (2014:10). Harms experienced by child users of online and mobile technolog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ssociation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Published by John Wiley & Sons Ltd.

Spears, B., Keeley, M., Bates, S. & Katz, I (2014) Research on youth exposure to, and management of, cyberbullying incidents in Australia: Part A – Literature review on the estimated prevalence of cyberbullying involving Australian minors (SPRC Report 9/2014)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UNSW, Australia.

